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5
----------	-----

제출년월일 : 2001. 10.

제출자 : 서초구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결유지책임제를 구체화하고 긴급재난시 폐기물 처리의 민·관 협력 방안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유지 책무를 강화함 (안 제4조)
- 나.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유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1)
- 다.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2)
- 라. 긴급 재난시 자치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자치구간 지원요청 또는 협력 근거를 규정함 (안 제8조의1)
- 마. 구청장은 긴급 재난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관할구역 안의 민간대행업자간 지원 또는 협력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안 제8조의2)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폐기물관리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입법예고(2001. 9. 10. ~ 10. 30.)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청결유지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1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1(청결유지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는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제4조의2(청결유지이행)** ① 제4조의1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은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의1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1(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민간대행업체간 지원 또는 협력)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청결명령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시행토록 명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4조(청결유지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 〈삭제〉</p> <p>제4조의1(청결유지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는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4조의2(청결유지이행) ① 제4조의1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p> <p>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은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p>
〈신설〉	<p>제8조의1(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p>
〈신설〉	<p>제8조의2(민간대행업체간 지원 또는 협력)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구청장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p>